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목 차

I. 사업목적	1
II. 지급금액 및 기준일	1
III. 지급대상	2
IV. 신청자격	3
V. 신청기간 및 방법	3
1. 신청기간	3
2. 신청방법 및 서식	4
3. 보호자 변경	5
VI. 세부지급 기준	5
1. 지급일	5
2. 전입시 처리	6
3. 외국인 아동 지원 관련 예외 규정	8
VII. 지급방법	8
VII. 지원중지 및 환수	9
VIII. 지침외 사례	10
IX. 부 칙	10
[서식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2
[서식2]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	15
[서식3] 출산육아수당 신청 위임장	16
[서식4] 보호자 등 변경 신청서	17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시행 2025. 1. 2.]

I 목 적

-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 출산·육아 가정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

II 지급금액 및 기준일

1.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아래 기준일에 따라 지급한다.

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아동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5세 생일	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 제1항 가호의 1회차에서 5회차에 이르는 기간 및 나호의 1회차에서 6회차에 이르는 기간을 '지원기간'으로 한다.

III

지급대상

1. '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한다.
2.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하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지 급 예 시

◆ 출생일이 '23. 3. 1. 인 경우

- '23. 3. 20. 도내 전입하면서 출생신고 한 경우 1회차 지원불가, 2회차부터 지원가능

3.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 가. 도내 거주하는 입양 부 또는 모가 지원기간 내 입양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나. 지급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 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출생아를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보호자가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라.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 및 출생아동 모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도내 체류하고 있는 경우

IV

신청자격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내 거주자로서 출생 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당의 신청 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민법」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등)

나. 가호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세부적 보호자 요건 확인 방법은 '첫만남이용권' 기준에 준함

다.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의 경우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 보호자로 간주함

*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將) 등

V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 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 출생신고 시 또는 전입 시(정부24로 전입한 경우 포함)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신 청 예 시

◆ 출생일이 '24. 2. 1. 인 경우

- 1회차 지급기준일 이후인 '25. 2. 2. 신청시 1회차 지급하지 않으며, 2회차부터 지급

2.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시행일 이전 출생한 경우 수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 10. 31. 까지)

* 각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인에 가장 유리한 기간으로 적용하며, 신청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청함

지 급 예 시

◆ 출생일이 '23. 2. 1. 인 경우

- 출생일로부터 6개월 '23. 7. 31. 까지 신청이 원칙이나 사업 시행일인 '23. 5. 1. 이후 6개월 이내인 '23. 10. 31. 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이 '23. 10. 1. 인 경우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4. 3. 31.까지) 신청 시 1회차부터 지급
- 1회차 지급기준일 이후인 '24. 8. 1. 신청시 1회차 지급하지 않으며, 2회차부터 지급
- 2회차 지급기준일 이후인 '24. 12. 1. 신청시 1,2회차 지급하지 않으며 3회차부터 지급

□ 신청 방법 및 서식

1.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의 부 또는 모, 4촌 이내의 인척

2. 출산육아수당의 신청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서식1)(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로 하되, 전입 등 기타 사유로 위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서식(서식2)]에 따라 신청한다.

3. 보호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서식3)]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경우 신청시 부 또는 모 및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체류 또는 거소 변경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호자 변경

1. 지원기간 중 각 호의 사유로 보호자가 변경되어 출산육아수당을 지급 받는 보호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호자 등 변경 신청서(서식4)]에 따라 변경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 이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지급대상 아동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가.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나.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지정·변경된 경우

다.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 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VI 세부 지급 기준

□ 지급일

1. (2023년 출생아) 1회차 지급의 경우 도내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 6개월 충족 등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기준일의 익월 말까지 지급하며, 2~5회차의 경우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 급 예 시

◆ 출생일이 '23. 4. 1. 인 경우

- '22. 12. 1.부터 부 또는 모가 도내 전입하여 '23. 4. 1. 출산한 경우 거주기간 6개월 경과 후인 '23. 6. 1.부터 6개월 이내인 '23. 11. 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차 300만원 지급 후, 2회차 기준일 '24. 4. 1.에 2회차 100만원 지급

지 급 예 시

◆ 출생일이 '23. 2. 1. 인 경우

- '23. 2. 1. 이전부터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한 경우 사업 시행일('23. 5. 1.)의 6개월 이내 '23. 10. 31. 까지 신청

◆ 출생일이 '23. 2. 1. 인 경우

- '23. 2. 1. 도내 전입과 함께 출생신고 시 거주기간 6개월 경과 후 '23. 8. 1.부터 6개월 이내인 '24. 1. 31.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차 300만원 지급 후 '24. 2. 1. 기준으로 2회차 100만원 지급

2. (2024년 이후 출생아) 지급심사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 급 예 시

◆ 출생일이 '24. 1. 1. 인 경우

- 도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던 경우 '25. 1. 1. 기준 1회차 100만원 지급

□ 전입시 처리

1. ('23년 1회차)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는다.

지 급 예 시

◆ 출생일이 '23. 1. 1. 인 경우

- 타 시도에서 출생 후 '23. 4. 30. 도내 전입 시 1회차는 지급하지 않으며, 2회차 기준일('24.1.1.)에 전입월부터 지급 가능
- 도내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도내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충족 시 전입 시군에서 1회차 지급

2. 제1항 외에 지원 기간 내 도내 전입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월부터 기준일 전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전입 이후 기준일의 익월 말까지 지급하되, 월할 계산금액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단위:원)	100만원 지급 차수	200만원 지급 차수
월할금액	83,000	166,000

지 급 예 시

◆ 출생일이 '23. 2. 1. 인 경우

- '23. 2. 1. 도내 전입 시 1회차 지급 가능
- '23. 2. 21. 도내 전입 시 1회차 지급 불가, 2회차('24. 2. 1.) 기준 100만원 지급
- '23. 10. 1. 도내 전입 시 2회차('24. 2. 1.)에 '23. 10. ~ '24. 1. (4개월) 기간분 332천원 지급
- '24. 10. 1. 도내 전입 시 3회차('25. 2. 1.)에 '24. 10. ~ '25. 1. (4개월) 기간분 664만원 지급

3. 전입자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차수에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소급 지급한다.

지 급 예 시

◆ 타시도에서 '23. 9. 15. 출산 후 '24. 3. 20.에 도내 전입하였으나 전입 신고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산육아수당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전입 당일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 '24. 8. 3. 출산육아수당을 신청한 경우

- 전입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1년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다음회차 지급 시('24. 9. 15.) 전입한 월부터 기준일까지 산정* ('24. 3.~'24. 8.)하여 지급
*전입시 전입일이 속한 월부터 기준일 전월까지 지급

4. (도내 시군간 전입) 지원 기간 내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전입지 시군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전출 시·군에서는 당월 지급대상자 전출 사실을 전입 시·군으로 매월 15일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기간 내 미통보 시 전출지 시군에서 지급)

통 보 예 시

◆ '24. 2. 지급대상자의 경우

- '24. 2. 지급대상자('23. 1. 출생아 2회차 등) 중 도내 타 시군 전출자 '24. 2. 15.까지 전입 시군으로 통보

5. (타시도 전출시) 이전 지급기준일과 전출일 사이 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 급 예 시

◆ 출생일이 '23. 2. 1. 인 경우

- 1,2회차 지급 받은 후 '24. 5. 1. 타 시도로 전출 시 '24. 2. ~ '24. 4. 기간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6. (타 시도 전출 후 도내 재 전입) 지원기간 내 타 시도로 전출 후 도내 재전입했을 경우 전입자 처리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 급 예 시①

◆ 출생일이 '23. 2. 1. 인 경우

- 1,2,3차 지급 받고 타시도 '25. 4. 1.전출 후 '25. 10. 1.다시 재전입 시, 전입 이후 기간분('25. 10. ~ '26. 1.)을 4회차 지급일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외국인 아동 지원 관련 예외 규정

1. (신청 및 서류확인)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일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한다)의 도내 체류(거소)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원기간동안 보호자와 아동의 체류(거소) 변동내역이 일치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명서를 통해 도내 체류(거소) 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 (지급일) 서류 검토를 통한 주거 기준심사 후 기준일의 익월 말까지 지급한다.

VII 지급방법

1. 출산육아수당은 각 호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가. 신청 자격을 갖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나. 지급대상인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2. 2023년 출생아의 1회차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보호자라도 거주요건 등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보호자의 계좌로는 지급할 수 없다.

지 급 예 시

- ◆ 부 또는 모 모두 신청 자격을 갖추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경우
 - 부, 모, 아동 모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 부 또는 모 모두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이나, 부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 자격이 있는 모, 아동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단, 추후 부의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

3. 출산육아수당을 지급 받는 계좌번호의 변경은 [보호자 등 변경 신청서 (서식4)]에 따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VIII

지원 중지 및 환수

1. 각 호의 경우 출산육아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

가. 출생아동이 사망한 경우

나.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양자 관계가 해제된 경우

다. 출생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라.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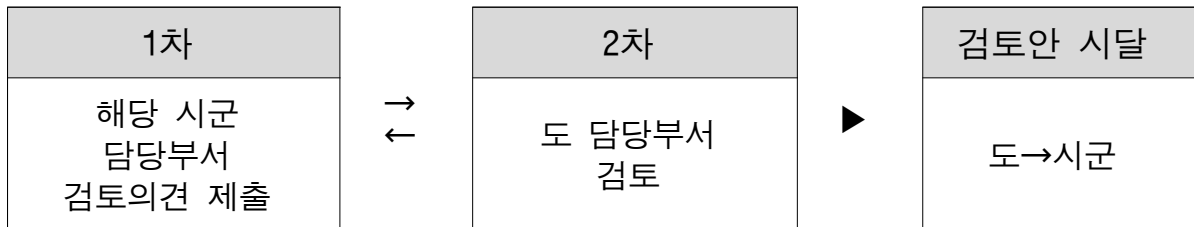
바.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 된 경우

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2. 마호에서 사호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수당 지원이 중지된 이후, 지원 기간 내에 중지 원인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신청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및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IX 지침 외 사례

- 해당 지침 외에 개별 사례와 관련하여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해석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른다.



X 부 칙

- (시행일) 본 지침은 2025. 1. 2.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입양의 경우 전입시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참고

업무 흐름도

구분	주체	내용
수당 신청	보호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 위임장 등)
↓		
접수 및 자격확인	읍·면·동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여부 확인 (보호자 해당여부, 출생일, 거주기간, 전입일 등) * 새올행정시스템 행복출산, 출산육아수당 지급 관리시스템에 입력처리
↓		
지급 대상 결정	시·군·구·보건소 (총괄담당부서)	지원 대상자 자격여부 · 지급금액 최종 검토
↓		
지급 및 내역관리	시·군·구·보건소 (총괄담당부서)	매월 해당 대상자 수당 지급 및 지급 내역 관리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 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생자	성명 ※ 출생자 모두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 와의 관계	출생 순위
	본인			[]에 []아니오			
	배우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자			[]에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 작성)	출산육아수당 (2023.1.1.이후 출생자)	담당공무원 확인	[] 해당 자녀 이름 :					
			충청북도 전입일	부		모		
			00시군 전입일	부		모		
	출산용품교환권	수령지 주소: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발급	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0000-0000)						
모유수유 클리닉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00-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부모급여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국기초 []차상위 []한부모 []기타) []조제분유([]산모의 사망·질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기타)	
	해산급여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다자녀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비 경감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다자녀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BC카드(은행)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 []신한카드
--------	--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작성	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에 √ 표를 하고, 직접 카드로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 명을 작성합니다.	

(3쪽 중 2쪽)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3년, 제공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센터,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3쪽 중 3쪽)

8.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회원탈퇴 시까지,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9.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동의 사항] 가족센터가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출산자(산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주지역 가족센터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가족서비스 안내(문자 연락 등)

* 안내받는 서비스 현황: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지역 가족센터 정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지역정보(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생년월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5년

이는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에도 통합신청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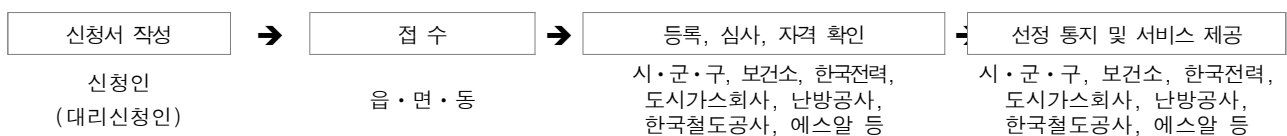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서식 2]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출생아와의관계		
보호자	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모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소					
출생아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호자와의 관계			출생일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자 (출생, 주소, 거주기간등)	총청북도 전입일	부	20. . . .	모	20. . . .	
	〇〇시·군 전입일	부	20. . . .	모	20. . . .	
	소속		직급		성명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보호자의 부 또는 모, 4촌이내의 인척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총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매 회차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조회 - 사업의 성과분석에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출산육아수당 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출생아와의관계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택 전화번호	
	주소			
출생아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호자와의 관계		출생일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위임내용	출산육아수당 신청 위임			
위임자(보호자) 본인은 위와 같이 출산육아수당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아동의 보호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서식 4]

보호자 등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출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변경 전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아동과의 관계					
	주 소								
변경 후 보호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아동과의 관계					
	주 소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변경사유	☐ 1. 출산육아수당 수급 계좌번호 변경 ☐ 2.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 3.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지정·변경된 경우 ☐ 4.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 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보호자 확인	출산육아수당 지급 보호자(또는 계좌번호) 변경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변경사유 1,2번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산육아수당의 보호자 등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귀하									
확인자 (출생, 주소, 거주기간등)	변경후 보호자 (신청인)	충청북도 전입일							
		○○시·군 전입일							
소 속				직 급			성명		
신청인 제출서류	1. 출산육아수당 수급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및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가 변경 하는 경우 - 신청서, 변경 전 보호자 및 변경 후 보호자(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사본 2.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지정·변경된 경우 및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변경 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사본, 그 밖에 보호자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신청하는 곳 : 변경 후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매 회차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조회 - 사업의 성과분석에 필요한 설문조사 등을 위한 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